

**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홍문표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413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. 4. 27.

발 의 자 : 홍문표 · 김상훈 · 김선교  
김희곤 · 박형수 · 성일종  
윤재갑 · 이달곤 · 이만희  
이명수 · 이 영 의원  
(11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 등의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됨.

이에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11조의2 신설 등).

##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의2. 간병비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간병비) ① 간병비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피인정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③ 간병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,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.

④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”을 “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전단 중 “제12조까지”를 “제11조까지, 제11조의2, 제12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(이하 “요양급여등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요양급여,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및 제11조의2에 따른 간병비(이하 “요양급여등”이라 한다)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제급여의 지급요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구제급여의 종류)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(이하 “구제급여”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~ 3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<br>4.·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구제급여의 종류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조(석면피해인정신청 등) ① <u>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</u>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(이하 “석면피해인정”이라 한다)을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받아야 한다.<br>② ~ ⑨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6조(석면피해인정신청 등) ① <u>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⑨ (현행과 같음)<br><u>제11조의2(간병비) ① 간병비는</u><br><u>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.</u><br><u>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피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제15조(구제급여조정금)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

인정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③ 간병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,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.

④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.

제15조(구제급여조정금) ① -----  
-----  
-----요양  
급여,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석면질  
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  
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 
다.

②·③ (생략)

제16조(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 
결정)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  
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  
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  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  
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  
다.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  
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8조(미지급 요양급여등) ① 제  
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  
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(이하  
“요양급여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  
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이하  
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이 사망한  
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  
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 
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 
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 
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 
지급한다.
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 
결정) ① -----제11조까  
지, 제11조의2, 제12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미지급 요양급여등) ① --  
-----요양급여, 제10조에  
따른 요양생활수당 및 제11조의  
2에 따른 간병비(이하 “요양급  
여등”이라 한다)를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